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2018.03.02. 개정: 2019.06.17. 개정: 2021.10.08. 개정: 2023.06.22. 개정: 2023.10.3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배곧라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 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정의】

-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 2 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제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진로인성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각학년 부장교사와 간사 1인으로 한다. 단 특정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협의할 때는 그 학생의 담임교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7조【의결정족수】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교육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 2.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선도 결과 공지 시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경기도교육청 2013.7.23.)」에 따른다.
- 제9조【폭력예방 계획 수립】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처리한다.
- 제10조【교사의 권리와 책임】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 1.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3. 본교 교사는 학생선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 하여야 한다.

## 제 3 장 학생 생활

## 제 1 절 교내 생활

제11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1. 학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2.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제13조【표현의 자유】

- 1.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교내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하며, 학생회를 통해 게시한다. 단,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3. 학생들은 학교 시설물의 훼손 및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타인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3. 고의적으로 다른 학생의 물건, 또는 학교 공공물 파손 시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한다.
- 4. 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되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제16조【교우관계와 폭력예방】

1.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또한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 ①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감, 교장선생님, 부모님께 직접 알려 도움을 받기
  - ② 학교폭력 신고함을 활용해 신고하기
  - ③ 학교에 전화로 상담하기 / 031-8032-6504(교무실)
  -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센터 활용하기 (전화:1588-7179)
  - ⑤ 기타 기관에 도움 신청하기 (경기도교육청, 경찰서 등)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수도 있다.

제17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8조【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9조【정보접근권 및 의사표현】본교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정보접근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 1. 학생은 학교운영 정보에 관하여 필요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타인의 개인 정보관련 내용은 열람이 불가하다. 이 외에, 특정한 사안은 학교 내규에 의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 2. 배곧라온초 방송반 운영은 방송반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 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4.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5.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 2 절 교외생활

제20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7. 유해업소(학생출입금지 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1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 3 절 정보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3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디지털카메라, 교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기기 등)도 특정한 사유 없이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한다.

## 제 4 절 학생자치회

제24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5조 [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는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등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2.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혐의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혐의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활동

제27조【학급자치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이상)

제28조【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29조【직무 및 선출】

- 1.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고 학급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③ 전교 자치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④ 학생들은 학생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30조【전교학생자치회】학생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 1. 구성

- ①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 기능

- ①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 ② 간담회는 회장과 부회장이 참여한다.
- ③ 간담회 결과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홍보한다.

### 3. 회의

- ① 전교학생자치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③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민주적 협의공간 확보

전교학생자치회는 독립적인 학생자치실을 확보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시설 및 예산】 지원시설 및 예산은 각 호와 같다.

- 1. 학교는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2. 학교는 학생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 4 장 학생생활지도

##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및 내용

제 32 조【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 하는 사항

제33조【안전지도】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며 담임(전담교사)이 직접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학교폭력(성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교통안전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한다.

제34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5조【소지품 검사】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2.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 가 진행한다.
- 3.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 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 4.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혹은 총괄교사, 진로인성부장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생활 보호】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 제37조【조언】

-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38조【상담】
  -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

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9조【주의】

-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 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훈육】

-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 육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

- 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 장소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 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  |  |  |
|--|----|--|---|---|-----------------------------|--|--|--|--|--|--|
| 1호<br>지도<br>수업시간 중<br>교실 내 다<br>른 좌석으로<br>의 이동 | 교시 | 낭 : 수업방해행동 학생<br>나가 수업시간 중 조<br>주의 등의 방식으로                                   | 교실 내 다른 좌석  | 1,2호 중 교사의<br>판단에 의해 지정<br>장소로 이동하도록        | 해당 장소에서<br>앉거나 선<br>상태에서    |  |  |  |  |  |  |
| 2  | 주의 | 를 주었음에도 불구<br>문제 행동을 반복하   | 교실 내 지정 장소<br>(실외 교육활동 시<br>학습집단으로부터의<br>분리 포함)   | 지시<br>(교사는 학생의 반성<br>정도를 판단하여 복귀<br>지시)     | 교사의 지시에<br>따라 수업<br>참여      |  |  |  |  |  |  |
|  | 가  | 1호 또는 2호<br>지도에도 불구하고<br>교육활동을 지속<br>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br>수 있는 개방된<br>교실 앞문 밖 복도<br>(수업 시간 내 일부)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 교과서 요약<br>등 과제 부여           |  |  |  |  |  |  |
| 3호<br>지도<br>수업 시간                              | 나  | 1호 또는 2호<br>지도를 거부하는<br>경우   | 704 774 F   | 교사가 학교장(또는<br>교감)에게 학생인계<br>요청 후,           |                             |  |  |  |  |  |  |
| 중<br>교실 밖 지<br>정된 장소로<br>의 분리                  | 다  | ① 수업 중 학생<br>간 물리적<br>다툼으로 수업을<br>방해하는 경우<br>또는                              | 교무실, 교장실 등<br>학교장<br>지정 장소<br>(해당 수업 종료시<br>까지)   | 교장 또는 교감이<br>인계하여 학생을<br>교무실 등 지정<br>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br>교과서 요약<br>등 과제 부여 |  |  |  |  |  |  |
|  |    | ② '가'에 따른<br>지도에도 행동<br><u>개선이 없는 경우</u><br>수업시간에 지각하                        |   | 학부모에게 지도<br>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  |  |  |  |  |  |
| 4호   | 가  | 수입시간에 시각아<br>여 교육활동을 방<br>해하는 경우   | 교실 등<br>(점심시간 내<br>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br>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br>등 과제 부여           |  |  |  |  |  |  |
| 지도<br>정규수업 이<br>외의 시간에<br>특정 장소로<br>의 분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br>를 성실히 따르지<br>않는 경우<br>또는<br>② 학교폭력 사안<br>처리 및 지도가 필<br>요한 경우 | 교장실 등 학교장<br>지정 장소<br>(60분 이내)  | 학교장이 학부모에게<br>지도 시간과 사유를<br>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br>과제 부여            |  |  |  |  |  |  |
| 기타   | 속적 | 으로 교육활동을 방혀  |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인계 후 가정습을 실시함. |   |                             |  |  |  |  |  |  |

-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3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4호)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①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③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④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br>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br>계속 사용하는 물품  |      | 교실 지정<br>장소              | <ul> <li>1회차 : 주의 실시</li> <li>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
| 3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br>물품<br>(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br>범기기 등<br>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br>판매될 수 없는 물품<br>(예시) 술, 담배 등<br>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br>금지한 물품 | 3일   | 교무실 등<br>학교장이<br>지정하는 장소 | <ul> <li>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li> <li>작성 관리함</li> <li>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br/>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br/>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li> </ul> |
|   | (예시) 휴대용 전자기기(교사<br>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녹<br>음기기 등)   |      |                          | 모판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만환임<br>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 제41조【훈계】

-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 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② 성찰하는 글쓰기
  -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 제42조【보상】

-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4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이의제기】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 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45조【기타 사항】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해야 한다.

## 제 7 절 학생 포상

제46조【포상】학교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학급은 업무담당자, 학년 협의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포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중 '포상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 제 8절 학생의 선도

- 제47조【선도 프로그램 원칙 및 기준】학생의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 1. 선도 프로그램에 관련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의 의견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 2. 선도 프로그램 규정은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선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3.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고 반드시 학생에게 선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 4. 선도 프로그램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교생활 인권규정 38조에 의해 실시한다.

제48조【규정】선도 프로그램 규정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1. 학교에서의 모든 체벌 및 언어폭력을 금지한다.(2019 개정)
- 2. 선도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
  - ①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 ②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 ③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진 경우
  - ④ 기타 학생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선도 프로그램의 실시
  - ① 선도 프로그램 규정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 ② 선도 프로그램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인정 표시가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 ③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개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가능한 한 다른 학생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선도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 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 프로그램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⑥ 선도 프로그램 후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고, 가정 과의 연계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49조【선도 프로그램】제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별 교육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해당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교사의 상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실 안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교실 뒤에서 수업 참여하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기 등)

3. 교실 밖 지도

교실 안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별 장소(상담실 등 담당교사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상담교사에게 상담의뢰하거나, 자기행동개선계획을 작성 하고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한다.

4. 학교 관리자 특별 상담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 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상담한다.

제50조【학생 선도】36조 제1~4항에 의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 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1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①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③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2. 사회봉사
  - ①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 이수

- ①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②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④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③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④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⑤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 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52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선.       | 도기준      |          |
|----|--|----------|----------|----------|----------|
| 항  | 내 용                                    | 교내<br>봉사 | 사회<br>봉사 | 별<br>바 교 | 출석<br>정지 |
| 1  | 도박을 한 학생                               | 0        |          | 0        | 0        |
| 2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0        | 0        | 0        |          |
| 3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0        |          | 0        |          |
| 4  |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0        |          | 0        |          |
| 5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0        | 0        | 0        |          |
| 6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0        |          | 0        |          |
| 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0        |          | 0        | 0        |
| 8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0        |          | 0        |          |
| 9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0        |          | 0        |          |
| 10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0        |          | 0        |          |
| 11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0        |          | 0        | 0        |
| 12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0        | 0        | 0        | 0        |
| 13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0        |          | 0        | 0        |
| 14 |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0        | 0        |          |          |
| 15 |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0        | 0        | 0        |          |
| 16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0        | 0        |          |
| 17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0        | 0        | 0        |          |
| 18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0        | 0        | 0        |          |
| 19 |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0        | 0        | 0        |          |
| 20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0        | 0        | 0        |          |
| 21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0        |          |          |          |
| 22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0        | 0        | 0        |
| 2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0        | 0        | 0        | 0        |
| 24 |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0        | 0        | 0        |
| 25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0        | 0        |
| 26 |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0        | 0        | 0        |
| 27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0        | 0        | 0        | 0        |

제5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이의제기】 선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재심청구】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 제65조【사안설명】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 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7조【심의절차】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 응답 :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 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 담임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8조【선도 내용의 통보】
  -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0조【결과 처리·열람】

- 1. 학생선도대장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2. 학생선도대장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제 6 장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61조【개정 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62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규정개정심의위 구성 시 전문가위원 1인을 포함한다. 이때 전문가는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며,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제6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은 각 호에 따른다.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학교장
- 제65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66조【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심의 및 결정을 각호에 따른다.

-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67조【공포 및 홍보】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교 직원 대상으로 학교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포하고 홍보한다.
- 제68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03.02.)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06.17.)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10.08.)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06.22.)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10.31)

## 〈 서식 1 〉

# 성 찰 문

20 년 월 일 / 학번: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 따라 서술)                |           |               |
|--------------------------------|-----------------------|-----------|---------------|
|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br>각하나요? | 은 사람은 누-              | 구이며, 어떤 피 | 해를 받았다고 신     |
|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          | 떻게 해야 한               | 다고 생각하나.  | 요?            |
|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          | <sup>4</sup> 이며, 어떤 도 | E움을 받고 싶( | 은가요?          |
| ▶ 부족하면 뒷면 이용<br>.              |                       | 담임        | 생활안전부장        |
| 보<br>호<br>자                    | , ,                   | <u> </u>  | 78 世 记 化 十 78 |
| 성명 :                           | ( 사인)                 |           |               |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 학생 성명     |     |   |          | 학번   |    |      |      | <br>성 | 별   | 남 / 여 |
|-----------|-----|---|----------|------|----|------|------|-------|-----|-------|
| ㅂ킈ㅇ처      | (   | ) | 3호       | 수업시간 | 중  | 교실 벽 | 밝 지기 | 정된 징  | 소로의 | 분리    |
| 분리유형      | (   | ) | 4호       | 정규수업 | 외의 | 의 시간 | 에 특  | ▶정 장≤ | 소로의 | 분리    |
| 일시        |     |   |          |      |    |      |      |       |     |       |
| 장소        |     |   |          |      |    |      |      |       |     |       |
| 관련자       |     |   |          |      |    |      |      |       |     |       |
| 분리 경위     |     |   |          |      |    |      |      |       |     |       |
| 물리적 제지 여부 |     |   |          |      |    |      |      |       |     |       |
| 및 내용      |     |   |          |      |    |      |      |       |     |       |
| 학교장 보고    | 일시: |   |          | 장소:  |    |      |      | 방법:   |     |       |
| 학부모 알림    | 일시: |   |          | 장소:  |    |      |      | 방법:   |     |       |
| 작성일       | 20  | 년 | <u>.</u> | 월 일  |    | 지    | 도 교  | 사     |     | (서명)  |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 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 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 서식 3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 학생 성명      |   |                                      | 학번      |            |        | 성   | 별 | 남 / 여 |  |
|------------|---|--------------------------------------|---------|------------|--------|-----|---|-------|--|
|            |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br>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         |            |        |     |   |       |  |
| 분리보관유형     | 23  |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            |        |     |   |       |  |
|            | 35  | 호 학생                                 | 에게 판매될  | 수 없는 둘     | 물품     |     |   |       |  |
|            | 4ই  | 호 소지                                 | 지금지 물품( | 학칙으로 🤇     | 정한 물품) |     |   |       |  |
| 일시         |   |                                      |         |            |        |     |   |       |  |
| 장소         |   |                                      |         |            |        |     |   |       |  |
| 관련자        |   |                                      |         |            |        |     |   |       |  |
| 분리보관<br>경위 |   |                                      |         |            |        |     |   |       |  |
| 보관일        |   |                                      |         | 반혼         | 반예정일   |     |   |       |  |
| 학교장 보고     | 일시:   |                                      | 장소      | <u>`</u> : |        | 방법: |   |       |  |
| 학부모 알림     | 일시:   |                                      | 장소      | <u>:</u>   |        | 방법: |   |       |  |
| 작성일        | 20  | 년                                    | 월 일     |            | 지도 교   | 사   |   | (서명)  |  |

<sup>※</sup>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 〈 서식 4 〉

#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 번<br>호 | 일시                               | 장소        | 학번    | 성명  | 분리보관 경위                                     | 지도<br>교사 | 보관일<br>반환예정일           | 학교장 보고<br>일시      | 보호자 알림<br>일시      | 반환<br>여부 |
|--------|----------------------------------|-----------|-------|-----|---|----------|------------------------|-------------------|-------------------|----------|
| 1      | 2023.9.14.<br>(월)<br>2교시         | 2-1<br>교실 | 10305 | 000 | 수업시간에 2회<br>주의에도<br>불구하고<br>휴대전화를 계속<br>사용함 |          | (3일)<br>2023.09.17.(목) | 2023.9.14.<br>(월) | 2023.9.14.<br>(월) | O,×      |
|        | 2023.9.14.<br>(월)<br>2교시<br>쉬는시간 | 복도        |       |     | 안전건강위해<br>물품                                |          |                        |                   |                   |          |
|        | 2023.9.14.<br>(월)<br>점심시간        | 운동장       |       |     | 학생구매불가<br>물품                                |          |                        |                   |                   |          |
|        |                                  |           |       |     | 학생소지금지<br>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의 제기 신청서

| 관련 학생 | 학번            |          | 성명         |          |
|-------|---------------|----------|------------|----------|
| 보호자   | 관련 학생과의<br>관계 |          | 성명         |          |
| 의견    | ※ 부당하다고 생     | 각하는 생활지도 | 내용 및 의견을 직 | 낙성해 주세요. |

-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이의제기 답변서

| 2023.00.00.(월) | 학생 | 또는 | 학부모 | $\bigcirc\bigcirc\bigcirc\circ]$ | 제기한 | 이의제기에 | 대한 | 답변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031-8032-65○○)

20 년 월 일

배곧라온초등학교장 (직인생략)